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판 의 장



제 682 호 2011. 2. 28(월)

규 칙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354호[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특·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2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35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1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5억 원 이상 10억 원"을 "3억 원 이상 5억 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설치)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상반기 2월 말까지, 하반기 8월 10일까지"를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반기 3월 20일까지, 하반기 9월 20일까지"를 "1차 심사는 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2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를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

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10억 원”을 “20억 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부·융자사업 심사기록』 개정안이
공포·시행(2011. 1. 1)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재정부·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연·축제 등 행사상 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액을 단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제2조제1항)
- 나.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제4조, 제5조)
- 다.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연 3회로 확대(제6조)
- 라.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나이난 사업중 재심사 기준액을 10억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호


2011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시유 등을 정합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합” 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 제6호 “(징계양정의 기준)”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사위원회는 징계법의지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기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협의자에 대한”으로,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견”을 “징계의견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견(이하 “징계의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은 “징계의견등 요구

권자는”으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징계를 의견하여야 한다”를 “징계의견등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징계사건”은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계 의결서와”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7조의 제6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견”을 각각 “징계의견등”으로,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증의사”를 “징계등 증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징계의견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읍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의 별표 5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의 제6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징계기준(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6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으로 하여 같은 표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6 “읍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읍주운전사

전 시리기준(제7조 편면)"으로 하여 같은 표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2조 편련)

비위의 정도 및 교실 이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설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설하고 증과신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설하고 경과신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없는 증과신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 등 힘의지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법사처벌을 받거나 벤처채 이 등록 피해(복수나 추첨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퇴근·면선큐·복수 또는 추첨금에 해당하는 금 이나 징계부가금의 두 가지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 등 혁의사가 법금 의의 형(법금형이 명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혐의 종류, 혐량 및 실형, 추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하위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공포(2010. 08. 02)

2. 주요개정내용

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 미위의 정도, 과실의 경증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제2조제1항)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가금 기재(제7조제1항)

나.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 용어정리(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제7조 관련)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정의
 - "징계의길 및 징계부가금의길"을 "징계의길등"으로 정의
 -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정의 등
-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기준 조문정비(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